



2014년 6월 10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신재생에너지과 노건기 과장(044-203-5160), 이선훈 사무관 (5163)
주현수 사무관 (5171)

신재생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·제도개선 본격 추진

- 신재생 공급의무화제도(RPS), 신재생 보급제도 등 개선 -

< 주요내용(요약) >

- (추진배경) 산업부는 범정부적인 규제개선 노력에 발맞춰 소관 분야의 덩어리규제 개선을 추진중에 있음
 - * 법정 인증제도, 무역 및 외국인투자, 경자구역·자유무역, 동북아 오일허브 등 4차례의 규제청문화 개최
 - 금번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산업부 소관 법령 뿐 아니라 하위지침까지 검토하여 규제·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음
 - * 『신재생에너지 규제·정책 간담회(6.1)』, 업계의견 등 수렴(5.30, 6.5)
- (개선사항) 신재생에너지 대표정책인 공급의무화제도(RPS), 보급 제도를 중심으로 산업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
 - ① (신재생 공급의무화제도, RPS) 투자경제성을 감안하여 REC 가중치를 조정하고, 최근의 이행여건을 반영하여 의무이행 유연성을 제고
 - 태양광 가중치는 지목구분을 폐지하여 유희부지 활용을 극대화하는 한편, 규모별 가중치를 통해 소규모 발전 활성화와 함께 대규모 설비 설치에 따른 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
 - 비태양광은 신규 발전원(지열·조류 등)에 가중치를 부여하고,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일부 발전원(해상풍력·조력 등)에 변동형 가중치를 도입하여 관련업계의 투자를 촉진
 - 버려지는 산업 부생자원 활용 확대를 위해 발전소 온배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포함하여 RPS 이행실적으로 인정하고 FTA 확산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가지원대책으로 활용

- 현실적인 의무이행여건을 감안하여 RPS 의무이행목표(총 전력 생산량의 10%) 달성시기를 당초 22년에서 24년으로 2년 연장
- ② (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) 실효성이 낮은 신재생 전문기업제도를 폐지하고, 보조금 산정기준이 되는 설비 기준가격 산정주기를 단축(연1회→2회)하여 설비가격 변동을 적기에 반영
- 향후 보급사업 주체를 '시공기업'에서 '소비자'로 전환하여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, 이를 위해 기업·설비가격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
- ③ (신재생에너지 6개 하위지침) 사업이 종료되거나 제도변경이 있는 4개 지침은 폐지 또는 관련내용을 정비하고,
 - 나머지 2개 지침은 용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, 설비시공기준에 최신 기술동향 반영 등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·보완
- (향후계획) 산업부는 상기 개선사항을 포함하여 「제4차 신재생 에너지 기본계획」을 준비중에 있으며, 상반기 중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련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발표할 계획임

< 상세내용 >

- 산업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긴 구조조정의 시기를 지나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,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산업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·제도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
 - * '13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태양광 관련제품 가격 회복세
 - 폴리실리콘 가격 : \$79/kg('11.3월) → \$15/kg('12.12월) → \$21.5/kg('14.5월)
 - 이를 위해 민·관·학 「신재생에너지 규제·정책 간담회」 개최(6.1, 한진현 차관 주재), 태양광 등 관련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재생 분야 규제·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,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
- 우선, RPS(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) 제도는 최근의 이행여건을 반영하여 의무이행 유연성을 제고하고 공급의무자들의 이행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선·보완할 계획임

① 신재생 산업육성을 위한 REC 가중치 조정

- (태양광) 5대지목(전, 답, 과수원, 목장용지, 임야) 등 지목에 따른 구분을 폐지하고, 설치유형과 규모에 따라 투자경제성을 감안한 차등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태양광 보급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임

* (일반부지, 건축물 활용) 규모별 가중치를 합산하여 적용하는 복합가중치 도입
(예, 일반부지에 500kW 설치시 : (100kW×1.2)+(400kW×1.0))

< RPS 태양광 가중치 개선안 >

설치유형	소규모 (100kW 미만)	중규모 (100kW이상 3MW이하)	대규모 (3MW 초과)
일반부지	1.2	1.2+1.0	1.2+1.0+0.7
건축물 활용	1.5		1.5+1.0
수상	1.5		

- 지목 구분을 폐지하여 전 지목의 유휴부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규모별 가중치를 통해 소규모 발전 활성화와 함께 임야 등에 대규모 설비 설치에 따른 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

- (비태양광) 현재 개발·실증단계에 있는 지열·조류 등에 대해 REC 가중치를 신규 부여하여 관련업계의 투자를 촉진하고,

- 해상풍력·조력 등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에너지원에 사업기간별 변동형 가중치를 도입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

< 변동형 가중치(예) >

현행(단일형)	개선(변동형, 선택가능)
수명기간동안 동일하게 2.0	해상풍력(5km 초과) : (5년) 2.5 → (10년) 2.0 → (이후) 1.0 조력(방조제 無) : (10년) 2.5 → (20년) 2.0 → (이후) 1.0

② 발전소 온배수 활용시 공급인증서(REC) 발급

- 발전소의 냉각수로 활용되고 버려지는 온배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발전소 온배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원에 포함하고, 발전소

에서 인근 농가 등에 온배수를 이용한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경우 RPS 의무이행으로 인정하여 공급인증서(REC)를 발급할 계획임

* 8개 화력발전소에서 年 2.4억Gcal가 발생하나, 활용율은 0.48%에 불과

- 이를 통해 산업 부생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입지규제 등으로 RPS 의무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전사들의 의무이행 수단을 확충하는 한편, FTA 확산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* 농가 에너지비용 절감, 농축산시설 구축으로 인한 농어민 소득증대, 일자리 창출 등

③ RPS 연도별 공급의무비율 조정

- 신재생 중장기 보급목표 재설정('30년 11%→'35년 11%), 입지규제 등 현실적인 이행여건 등을 감안하여 RPS 의무이행목표(총 전력 생산량의 '10%) 달성시기를 2년 연장('22년 → '24년)할 계획임

< RPS 연도별 공급의무비율 개선안 >

해당 연도	'15	'16	'17	'18	'19	'20	'21	'22	'23	'24
현행	3.5	4.0	5.0	6.0	7.0	8.0	9.0	10.0		
개선(안)	3.0	3.5	4.0	4.5	5.0	6.0	7.0	8.0	9.0	10.0

- 이를 통해 RPS 공급의무자(발전사)들의 의무이행률이 제고되는 한편,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담도 일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

* 의무이행률 : 64.7%('12년), 67.2%('13년)

-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는 제도이행의 실효성이 낮고, 타 제도와 중복되는 사항 등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할 계획임

- 신고기준이 낮아(자본금 1억원, 기술인력 2인) 변별력을 갖지 못하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제도는 폐지하되,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선정을 위한 기준을 강화하여 책임시공을 강화할 예정임

*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(9,000여개) 중 매년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300여개

- 또한, 보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**설비 기준가격 산정주기**를 **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늘림**으로써 설비단가 변동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 - 향후 **보급사업의 주체를 '시공기업'에서 '소비자'로 전환**하여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, 소비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기업, 설비가격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계획임
- 신재생에너지 법령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**6개의 하위지침**(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)도 **전면 개선·보완**할 계획임
- **사업이 종료되는 2개 지침***은 상반기내 폐지하고, KS인증 통합 등 **제도변경이 있는 2개 지침****은 **관련내용을 정비**할 계획임
- * 「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운영지침」, 「성능검사기관 고도화사업 운영지침」
 ** 「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」, 「발전차액지원제도 운영규칙」
- 보조금·용자사업 등에 관한 「**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**」과, RPS제도에 관한 「**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**」중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할 예정임
 - 일례로, **태양광 용자사업** 신청시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, **지열설비 시공기준**이 최근 기술동향을 반영하지 못해 시공비가 상승하는 문제 등이 있어 이를 개선할 계획임
- 산업부는 금번 개선사항 등이 포함된 “**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 계획**”을 준비중에 있는 바, **상반기 중 공청회를 개최**하여 관련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 발표할 계획임
- 한진현 차관은 “신재생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신속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, 앞으로도 신재생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노력을 기울일 계획”임을 밝혔음
- ※ 참고 : 신재생에너지 하위지침 주요 개선사항

참고

신재생에너지 하위지침 주요 개선사항

연번	주요내용	현행	개선방향
1	태양광 용자 신청	불필요한 서류 제출 * 건축구조안전진단보고서	금융지원사업 접수이후 자금추천이 완료된 시점에서 서류 제출
2	지열이용검토서 작성 및 검토기준	지열이용 검토기준 복잡	검토기준 간소화
3	지열설비 시공기준	보어홀의 채움재를 벤토나이트로 한정	보어홀에 입자가 굵은 자갈 등의 채움재 사용허용
4	벤토나이트 혼합물 열전도도 기준	열전도도 지표가 있는 6종의 벤토나이트 제품만 사용 가능	열전도도 지표가 없는 신규제품의 경우에도 시험기관에서 일정 기준에 준하는 시험성적서 발급시 사용 허용
5	전력공급량 계량설비 설치 기준	바이오-폐기물 동시 연소 하는 혼소 발전의 경우 단일한 공급인증서 발급	투입량, 발열량 등의 정보를 통해 해당 비율만큼의 REC 발급
6	태양광인버터 및 연료 전지 인증제품 이용 기준	착공시 인증제품이 없어 비인증제품으로 시공후 설비확인시 인증제품이 있으면 재시공 의무	인증제품 확인시점을 “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시점”으로 변경
7	건축물 이용 설비 기준	군 사격장 등 외벽설치가 어려운 특정 공공건축물은 1.5%중치 적용 불가	행정기관 지침, 조례 등을 통해 건축물의 설치유형이 정의된 특정 건축물의 경우 외벽 기준을 완화하여 가중치 적용